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5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영한,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민옥, 이병운, 이상욱,
이새날, 이은림, 이종배,
이종환, 임만균, 임춘대,
정준호,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황철규 의원(38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시, 해당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선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하여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친선도시 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음.
- 그러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세부적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결연취소 대상에 우호협력협정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세부적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나. 결연취소 대상에 우호협력협정을 추가하고 문구를 정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결연의 취소)”를 “(친선결연 등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중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을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친선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p>
<p>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 -----.</p>

문서 번호

2023101200000016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홍국표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2.

회신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및 제10조(결연의 취소)의 변경을 통해 친선결연 및 결연의 취소시 시의회 역할(의결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